

## 회의록

### [외교통상위원회] 상임위원회의 5

안건명: “만약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, 가족 또는 연고자를 식별할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기관들이 이들을 보호할수 있도록 해야한다.” 관련 법률 사례 조사 내용

회의 일시: 2024년 09월 15일

회의 참석자 (가나다순): 강다영 멘토, 김단아 의원, 김지호 의원, 김은설 의원, 이지안 의원

#### [내용]

김지호 의원:

참조: 공공안전학석사 학위논문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시행령(안)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(링크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라와 있음)

- PPT/질의응답용으로도 참조 가능

이지안 의원:

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국내법 (대한민국 기준):

- **재외국민보호법**: 대한민국 정부 -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특히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을 식별할 수 없거나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사관 등의 기관이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**영사조력법**: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었거나,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사관이 이를 지원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(2021년부터 시행됨).


[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](#)

김은설 의원:

- [해외여행 재개에 재외국민 피해 급증... "상반기에만 7천명 넘어" | 연합뉴스](#)
- [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](#)
- [영사조력의 주요개념과 기본원칙](#)

1.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게 사건·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.
2.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하며,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**응급 상황 (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/신체 및 재산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)에서 경찰관이 1차적 보호조치를 행하도록 한다. 영사 조력법 제19조에 의해 미성년자를 무자력 상태로 판단하여 의무를 수행할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.**
3. 제1항에 따른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 제2항에 따른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·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
- 
- 응급 상황이며 해외 (타지)에 있다보니 대리인과 연락 어려움
  - 미성년자같은 경우, 소중한 시간을 잃으면 안되기에 경찰관이 1차 조치 취함
- 

\*\*  입법청원안! 참조\*\*

- PPT 만들기
- 질의응답 사전준비
- 입법청원안 format
- Due next Sunday (다음주 일요일 09/22 까지)